

■ 지원규모

- 기업별 최대 1명까지 지원
- 최대 3년으로, 최초 2년 지원 후 평가를 통해 1년 연장 가능
- (지원금액)

구분	기술전문 경력인
정부지원액/연	계약 연봉 대비 40% 이내 지원
최소 기준연봉	별도 기준 없음
최대 지원한도	2,800만원

※ 기준연봉 산정 : (기본월급 + 월정액 수당, 퇴직금 제외) x 12개월

■ 문의처

-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홈페이지 (fomek.or.kr)
-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정책본부 사업지원실 (☎ 02-3275-2986)

인력지원

인력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이공계 연구인력 채용 및 파견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신성장동력 창출 및 기술혁신역량 강화

관련부처 : 중소벤처기업부 **지원대상 :** 중소기업
전문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업개요

분야	구분	내역사업명	지원규모	비고
채용	①	신진 연구인력 채용지원	350개 과제 내외	기업당 최대 1명
	②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지원		기업당 최대 2명
	③	소재부품장비 연구인력 채용지원		
파견	④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	120개 과제 내외	기업당 최대 1명

I. 신진 연구인력 채용지원

■ 지원대상

- (지원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인정받은 기업

- **(연구인력)** 이공계 학·석·박사 학위 취득일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않은 만 39세 이하 청년인력

- '18년 학위 취득자부터 '23년 2월 학위 취득예정자까지 신청 가능 ('23년 기준)
- 연령제한: 생년월일이 1983년 2월 8일 이후인 자(1983년 2월 8일 포함) ('23년 기준)

■ 지원내용

- 이공계 신진 연구인력의 채용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경쟁력 제고 및 청년 일자리 창출

■ 지원규모

- (지원과제) 260개 과제 내외
- 신진 연구인력을 채용한 중소기업에 최대 3년간 기준연봉의 50% 지원

구분	기준연봉*			정부지원연구개발비(정부지원금)**		
	1년차	2년차	3년차	1년차	2년차	3년차
학사	2,700만원	3,000만원	3,300만원	1,350만원	1,500만원	1,650만원
석사	3,600만원	4,000만원	4,400만원	1,800만원	2,000만원	2,200만원
박사	4,500만원	5,000만원	5,500만원	2,250만원	2,500만원	2,750만원

* 기준연봉(세전금액) : ① 사업참여를 위해 채용대상자와 계약해야 하는 최소연봉(기준연봉 이상 계약 필수) ② 산출식 : (기본급+월정액수당(퇴직금 제외))×12개월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연봉과 관계없이 정부에서 지원하는 고정 지원금

II.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지원

■ 지원대상

- **(지원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인정받은 기업

- **(연구인력)** 이공계 학·석·박사 학위 취득 후, 기업·공공연구기관·대학 등에서 연구경력이 학사 14년, 석사 10년, 박사 5년 이상인 자

■ 지원내용

- 고경력 연구인력의 중소기업 채용지원을 통해 중소기업 기술개발역량 강화 및 신중년 일자리 창출

■ 지원규모

- (지원과제) 90개 과제 내외
- 기업별 1명으로 최대 3년간 연봉의 50%지원

구분	연봉*	정부지원금
지원기준	제한 없음	연봉의 50% (연간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

* 연봉(세전금액) : (기본급 + 월정액수당(퇴직금 제외)) × 12개월

III. 소재부품장비 연구인력 채용지원

■ 지원대상

- **(지원기업)** 다음의 소재부품장비 기업 중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

- 강소기업 100, 100+ : 중소벤처기업부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100+ 프로젝트 선정기업
- 스타트업 100 : 중소벤처기업부 소재·부품·장비 스타트업 100 선정기업
- 협력·상생모델 :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협력모델 또는 상생모델 승인기업
- 으뜸기업(특화선도기업)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으뜸기업 선정기업

- (연구인력) 신진 및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 모두 지원 가능

구분	학위	인력 조건
신진	이공계 학사·석사·박사	학위 취득 후 5년 이내자(사업공고일 기준 만 39세 이하인 자)
고경력		학위 취득 후 학사 14년, 석사 10년, 박사 5년 이상의 연구경력 보유

■ 지원내용

- 소재·부품·장비 분야 이공계 연구인력 채용지원을 통해 국내 소재·부품·장비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

■ 지원규모

- 기업별 신진 1명 + 고경력 1명으로 최대 2명, 3년간 지원

※ 사업공고일 기준 동 사업을 통해 2명의 지원인력이 협약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사업 수혜 불가능

구분		기준연봉			정부지원연구개발비(정부지원금)		
		1년차	2년차	3년차	1년차	2년차	3년차
신진	학사	2,700만원	3,000만원	3,300만원	1,350만원	1,500만원	1,650만원
	석사	3,600만원	4,000만원	4,400만원	1,800만원	2,000만원	2,200만원
	박사	4,500만원	5,000만원	5,500만원	2,250만원	2,500만원	2,750만원
고경력		해당없음			연봉의 50%(최대 5,000만원/년 지원)		

※ 신진 기준연봉(세전금액) : ① 사업참여를 위해 채용대상자와 계약해야 하는 최소연봉 (기준연봉 이상 계약필수) ② 산출식 : (기본급+월정액수당(퇴직금 제외))×12개월

※ 고경력 연봉(세전금액) : (기본급+월정액수당(퇴직금 제외))×12개월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신진) 연봉과 관계없이 정부에서 지원하는 고정 지원금 (고경력) 연봉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연간 최대 5,000만원

IV.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

■ 지원대상

- (지원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선정한 기업
-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3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선정한 기업
- '벤처기업'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
-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14조의2에 의거하여 인정

■ 지원내용

- 공공연 연구인력을 중소기업에 파견하여 기술 노하우 전수 및 R&D 수행 지원을 통한 기술혁신역량 강화

- 석·박사 학위 또는 동등 자격을 보유한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원을 중소기업에 파견지원

※ '22년 참여 공공연구기관(17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전자동신연구원, 국가보안기술연구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재료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전자기술연구원, 한국자동차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23년 변동가능)

- 파견 인력은 지원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에 배치되어 다음의 업무를 수행

구분	업무내용
기술개발	기술전략 및 개발계획 수립, 기술개발 수행, 시험평가(성능, 규격, 내구성 시험 등) 등
기술기획	논문·특허 등 조사·분석, 기술예측, 기술개발과제 도출, 신상품 기획 등
기술관리	특허출원, 품질관리·인증, 기술영업, 기술협력선 발굴 및 전략적 제휴, 협력기업 기술관련 대응 및 관리 등

■ 지원규모

- (지원과제) 120개 과제 내외
- 최대 3년 이내 파견인력 연봉의 50% 지원

구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최초 기업파견 지원 3년 이내	파견연구기관 연봉의 50% (한도 제한 없음)
추가연장 지원 3년	파견연구기관 연봉의 60% (한도 제한 없음)

* 추가연장 지원 : 파견인력을 기업소속 정규직으로 채용한 경우 연봉의 60% 지원(정부) 및 해당 인력에 게 별도 인센티브 지급(정부 10%, 기업 5%)

- 기업별 파견 인력 1명까지 지원 가능하며,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경우 최대 2명까지 가능

- 강소기업 100, 100+ : 중소벤처기업부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100+ 프로젝트 선정기업
- 스타트업 100 : 중소벤처기업부 소재·부품·장비 스타트업 100 선정기업
- 협력·상생모델 :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협력모델 또는 상생모델 승인기업
- 으뜸기업(특화선도기업)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으뜸기업 선정기업

■ 문의처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smtech.go.kr)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지역협력사업실 (☎ 044-300-0842, 0847)
- (신진 연구인력)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기술인력지원팀 (☎ 02-3460-9171, 9123, 9062, 9090, 9080)
- (고경력 연구인력)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기술인력지원팀 (☎ 02-3460-9172, 9082, 9124, 9130)
- (소재부품장비)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기술인력지원팀 (☎ 02-3460-9171, 9172, 9123, 9062, 9082)
- (공공연 연구인력)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기업지원팀 (☎ 044-287-7258, 7386)

인력지원

인력

해외우수과학자유치사업(Brain Pool/Brain Pool+)

국내 산·학·연 연구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해외 우수 과학자를 국내 연구기관에 초빙하여 우수 연구성과를 창출하고 국내 연구환경 국제화, 신성장동력 확보, 신진 연구인력 양성,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에 기여

관련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원대상 : 대·중견·중소기업

전문기관 : 한국연구재단

I. Brain Pool (BP) 사업

■ 지원대상

- (연구개발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국·공립연구기관, 대학 및 대학부설 연구기관, 기업, 기업부설연구소, 비영리재단법인 연구기관
- (연구책임자) 연구개발기관 소속 정규직으로 조교수, 선임연구원, 기업 및 기업부설연구소 부서장(연구소장) 이상인 자
※ 연구책임자는 동일한 해외우수과학자와 유형1·2 동시 지원 불가
- (해외우수과학자)
 - ① 접수일 기준 해외(대한민국 외) 거주중인 박사학위자(재신청 제외)
 - ② 기업 및 기업부설연구소인 경우 박사학위 없이 해외(대한민국 외) 현지 산업체에서 5년 이상 연구개발경력자도 신청 가능
 ※ 접수일 기준 박사학위 취득 예정인 자 및 해외에 일시 체류 중인 자는 신청자격에서 제외됨